

비밀의장 등록출원

의장출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상 사정으로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비밀로 해주는지와 그 비밀의 기간은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

의장은 외관에 표현되어 있어 타인에 의하여 쉽게 모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권리설정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그것을 비밀로 하여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기하기 위하여 의장법상에 비밀의장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의장등록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인은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비밀의장 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비밀기간은 3년 기간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도 있다. 다만,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 그 비밀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한 심사·심판, 항고심판·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을 때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 및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열람을 시킬 수 있다. 비밀의장은 비밀청구기간 동안만 공표할 수 없는 것 이외에는 일반의장과 동일하다.

물건의 특허표시

연필을 만드는 기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이 기계로 만든 연필에도 특허표시를 할 수 있나?

특허권자는 특허에 관계되는 물건,

즉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그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에 관계되어 있다는 취지의 특허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며, 이 특허표시는 특허권자는 물론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도 할 수 있다.

또한 특허표시를 하면 특허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연필을 만드는 기계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해당되므로 그 기계에 한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 연필에는 특허표시를 할 수 없다.

만일 연필에도 특허표시를 한다면 이는 특허법상의 허위표시 죄에 해당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허권 설정료와 납부시기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사정서를 받았다. 특허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납부시기와 특허료는 어떻게 되나?

특허료는 특허사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1만5천원)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 특허료(1만5천원)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다.

제4차년도분부터의 특허료는 매년 1년분씩(제4년~제6년 매년 2만8천원, 제7년~제9년 매년 5만6천원, 제10년~제12년 매년 7만1천원, 제13년~제15년 매년 14만원, 제16년~20년 매년 28만원)당해 존속기간 기산일을 기준하여 그 전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특허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 설정의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차료 불납에 의한 권리소멸과 회복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연차료를 납부할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회복시킬 수는 없는지?

특허료의 연차분은 선납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년 1년분씩 아니면 전년분의 특허료를 당해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을 기준하여 그 전해에 납부하여야 하나 특허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추납기간에는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이 추납기간내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이 법정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멸된 특허권은 회복할 수 없다. **ST**